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071

발의연월일: 2021. 11. 2.

발 의 자:정희용・金炳旭・김석기

김용판 • 백종헌 • 송언석

지성호・최춘식・추경호

태영호 • 한무경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가상자산, 가상자산업, 가상자산사업자, 가상자산이용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(안 제46조의3).

- 다.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46조의4).
- 라.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함(안 제46조의5).
- 마.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(안 제46조의6 및 제46조의 7).
- 바.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매매등의 안전성,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(안 제46조의 8).
- 사.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(안 제46조의9).
- 아. 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,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(안 제46조의10부터 제46조의13까지).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1호 중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"선불전자지급수단, 가상자산"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3. "가상자산"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한다)를 말한다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- 가. 화폐·재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
 - 나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·무형의 결과물
 - 다.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
 - 라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
 - 마.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전자어음

- 바. 「상법」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
- 사.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24. "가상자산업"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가상자산을 발행(가상자산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 는 것)하는 행위
 - 나. 가상자산을 매도. 매수하는 행위
 - 다.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
 - 라.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 - 마.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
 - 바.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
 - 사.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25. "가상자산사업자"란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가상자산발행업자
 - 나. 가상자산매매업자(가상자산 매매·교환 등을 중개·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며, 주된 업을 위하여 보조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
 - 다. 가상자산관리업자(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·관리하며 그 대가를 수취하거나 신탁·운용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중개, 알

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)

- 라. 가상자산지갑업자(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보관매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및 이전행 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로 가상자산매매업자 또는 가상자산 관리업자를 보조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)
- 26. "가상자산이용자"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매, 교환, 보관 또는 관리 및 이전 등(이하 "매매등"이라 한다)의 행위를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가상자산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제1항제3호 중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"선불전자지급수단, 가상자산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3호 중 "직불전자지급수단"을 "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산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"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산"으로 한다.

제5장의2(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13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2 가상자산에 대한 특례

- 제46조의3(가상자산업자의 신고 및 인가) ① 가상자산지갑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, 그 외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업의 신고 및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 - 2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 - 3.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 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-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절차,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4(가상자산발행 승인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발행 승인의 기준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46조의5(설명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(가상자산을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권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명칭과 내용, 매매등에 따

르는 위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6조의6(가상자산예치금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(가상 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 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예치금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.
 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·압류(가압 류를 포함한다)하지 못하며,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한 가상자산사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 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 - 1. 인가가 취소된 경우
 - 2. 폐업하게 된 경우

-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⑤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, 예치의 비율, 예치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7(피해보상계약 체결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6조의6에 따른 가상자산예치금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계약
 -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「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 증계약
 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8(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)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등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, 소요경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46조의9(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-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-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자 산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제46조의10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(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를 가상 자산의 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6조의11(시세조종행위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
- 2.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
- 3. 그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는 행위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
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 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 는 행위
- 2.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 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
- 3.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
-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관한 일련의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.

- 제46조의12(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
 - 2.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,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 - 3.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
 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, 위계의 사용,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제46조의13(자금세탁행위등의 금지) 누구든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 닉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, 그 밖에 탈법행위(이하 "자금세탁행위등"이라 한다)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제7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

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.

- 1. 제46조의10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
- 2. 제4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3. 제46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4. 제4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자
- 5. 제4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6. 제46조의12제2항을 위반한 자
- 7. 제46조의13을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을 한 자 제49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제46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한 자
 - 8. 제46조의4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상 자산을 발행한 자

- 9. 제4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권유하면서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
- 10. 제46조의6에 따른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제46조의7에 따른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
- 11.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가된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10. (생 략)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"전자지급수단"이라 함은 11. ------전자자금이체, 직불전자지급 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 ---선불전자지급수단, 가상자산-자화폐, 신용카드,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. 12. ~ 22. (생략) 12. ~ 2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23. "가상자산"이란 경제적 가 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화폐·재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 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 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

나.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」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게임물의 이용을통하여획득한유·무형의결과물

 다.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

 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

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

라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

 마.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

 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
 2호에 따른 전자어음

<u>바. 「상법」 제862조에 따른</u> <u>전자선하증권</u>

<u>사.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</u> <u>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는 것

24. "가상자산업"이란 가상자산 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가상자산을 발행(가상자산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

<u><신 설></u>

체계를 만드는 것)하는 행위

- <u>나. 가상자산을 매도, 매수하</u> 는 행위
- 다.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 산과 교환하는 행위
- 라.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<u>마.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</u> 리하는 행위
- 바.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행위
- <u>사.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</u> <u>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행위</u>
- 25. "가상자산사업자"란 가상자 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가상자산발행업자
 - 나. 가상자산매매업자(가상자 산 매매·교환 등을 중개·알 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

를 말하며, 주된 업을 위하여 보조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

다. 가상자산관리업자(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· 관리하며 그 대가를 수취 하거나 신탁·운용 등의 행 위 또는 이를 중개, 알선하 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) 라. 가상자산지갑업자(가상자 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

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 적 방식의 보관매체를 대 가를 받고 제공하여 가상 자산의 보관 및 이전행위 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로 가상자산매매업자 또는 가상자산관리업자를 보조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 는 자를 말한다)

26. "가상자산이용자"란 가상자산의 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매, 교환, 보관 또는 관리 및 이전 등(이하 "매매등"이라 한다)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- 제13조(지급의 효력발생시기) ① 저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.
 - 1. ~ 2. (생략)
 - 3. <u>선불전자지급수단</u> 및 전자화 폐로 지급하는 경우 : 거래지 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
 - 4. (생략)
 - ② (생략)
- 제23조(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 과 이용한도)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

	3조	:(적	용범	위)	1	\sim	3	(현	행
4	깉	음)							
(4	가~	상자	산의	전	가 ス]급;	거래	에
	관	하여	서는	다	른	법	룰에	특	<u>별</u>
	한	규>	정이	있는	= 7	경우-	를 :	제외	하

따른다.		
제13조(지급의	효력발생시기)	1

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

		•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<u>선불전자지급수단, 가상자산</u> ------
-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) ① -----

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~ 2. (생 략)
- 3. <u>직불전자지급수단</u>의 이용한 도
- ② (생략)

제37조(가맹점의 준수사항 등) ①
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
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
자화폐(이하 "전자화폐등" 이라
한다)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
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
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
대우하여서는 아니되다.

② ~ ④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
<u>산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37조(가맹점의 준수사항 등) ①
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
<u> 자산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장의2 가상자산에 대한 특례
제46조의3(가상자산업자의 신고
및 인가) ① 가상자산지갑업을
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

가상자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,

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

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업인가

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업의

신고 및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

를 받아야 한다.

추어야 한다.

- 1.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 기자본을 갖출 것
- 2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것
- 3.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가 가 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

 재무상태와
 사회적
 신용을

 갖출 것
-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절차,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-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발행 승인의 기준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(가상 자산을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권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명 청과 내용, 매매등에 따르는 위 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5(설명의무) ① 가상자산

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그 밖의 대통령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6조의6(가상자산예치금) ① 가 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 금(가상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 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예 치받은 금전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 치하여야 한다.
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 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예치 금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재산이 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 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· 압류(가압류를 포함한다)하지 못하며,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 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한다.
- 1. 인가가 취소된 경우
- 2. 폐업하게 된 경우
-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

- ⑤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, 예 치의 비율, 예치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- 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계 약
 - 2.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보상 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
 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8(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)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등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, 소요경비 등

<u><신 설></u>

-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46조의9(가상자산사업자의 손 해배상책임) ① 가상자산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 상자산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-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 -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 -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대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

<신 설>

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자산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46조의10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(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를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6조의11(시세조종행위 금지)
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

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 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 는 행위

- 2.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
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
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
 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
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
 는 행위
- 3. 그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는 행 위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
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

- 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 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
- 2.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 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 하는 행위
- 3.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함 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행위
-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시세 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관한 일 련의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
- 제46조의12(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 교를 사용하는 행위
 - 2.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

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 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,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 고자 하는 행위

- 3.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 용하는 행위
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 의 유포, 위계의 사용, 폭행 또 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46조의13(자금세탁행위등의 금 지) 누구든지 「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,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 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, 그 밖에 탈법행위(이하 "자금세탁행위등"이라 한다)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등을

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

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

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

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

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

다.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제46조의10을 위반하여 미공 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 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
- 2. 제4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3. 제46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
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
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4. 제46조의11제3항을 위반한

제49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자

- 5. 제4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6. 제46조의12제2항을 위반한 자
- 7. 제46조의13을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을 한 자

제49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7. 제46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한 자
- 8. 제46조의4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
- 9. 제4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권유하 면서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 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

<u><신 설></u>	10. 제46조의6에 따른 가상자산
	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
	제46조의7에 따른 피해보상
	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
<u><신 설></u>	11.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
	수하지 아니한 자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